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시행세칙

1. 총칙

(1)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며 업계의 자체적인 규제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과 실시조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특별 제정한다.

(2) 본 세칙은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과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업체(이하 '수입식품기업'이라 함)의 불량기록 사용관리에 적용한다.

(3)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중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작업을 주관하며 관련 통제조치를 확정하고 발표한다.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수집, 승인, 보고하고 불량기록을 작성하며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식품기업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2. 불량기록생성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뒤 수입식품기업의 불량기록을 기록한다.

- (1)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작업 중에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2) 중국 내 기타 정부부처가 통보하고 업계 협회, 기업, 소비자를 반영한 식품안전정보
- (3) 국제조직, 해외정부기구, 해외업계협회, 기업, 소비자를 반영한 식품안전정보
- (4) 기타 수입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

3. 위험예고와 통제조치

(1) 질검총국은 각급별 불량기록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제품에 대한 처리조치의 원칙(부록 1, 2)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2) 직속 검사검역국은 각자의 관할구역의 불량기록에 대해 종합하고 상부에 보고하며 심각한 불량기록정보에 대해서는 즉각 판단하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질검총국은 종합한 전국 불량기록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판단결론에 근거하여 위험예고통보를 발표하며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각기 다른 수준의 통제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실시리스트>에 포함되고 이미 등록자격을 획득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중국 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감위)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총국 2012년 제145호령)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자격을 수정 또는 중단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처리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

4. 위험예고해제

(1) 해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위험예고 해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부록1) 사업자 등록지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식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직속 검사검역국에 위험예고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직속 검사검역국, 질검총국의 등급별 위험판단을 통해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질검총국이 즉각 위험예고 및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2) 해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위험예고 해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부록1) 소재국/지역의 식품안전주무부처에 위험예고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안전주무부처는 기업이 신청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정조치와 조사보고서를 질검총국에 통보한다. 질검총국은 위험판단을 하여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위험예고 및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3) 불량기록이 전체 국가/지역과 관련될 경우 위험예고 해제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록2) 식품안전주무부처는 문제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상황을 감독하여 질검총국에 통보한다. 질검총국은

위험판단을 하여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위험예고 및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5. 부칙

- (1)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이전에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가 이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2) 기업이 제공한 검사보고서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해외의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검사능력을 갖춘 검사기관과 식품검사기관으로의 자격을 인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사기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동적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검사보고서는 수입식품의 생산일자 또는 생산로트번호와 일일이 대응되어야 한다.
 3.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 리스트에 포함되었을 경우 검사보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수입화장품의 불량기록관리는 본 세칙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4) 본 세칙은 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 (5)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록1

불량기록이 있는 기업의 수입식품관리와 통제조치

위험예고조건				통제조치	위험예고 해제조건		
불합격 항목 분류	제품 종류수	불합격 항목 종류수	불합격 차수 수		공동조건	지정시간	지정차수
안전위생 항목	1	1	≥2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의 불합격항목 에 대한 검사보고서 제공을 요구	1. 통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품질안전 문제 미발생 2. 통제조치를 실시하는 시간이 지정시간보다 적지 않음 3. 통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모든 식품의 수입차수가 지정차수보다 적지 않음	6개월	5
	1	≥2	≥4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의 제공을 요구		12개월	10
	≥2	≥2	≥8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 제공을 요구		12개월	10
비(非) 안전 위생항목	1	1	≥3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의 불합격항목 의 검사보고서 또는 관련 증명자료 제공을 요구		6개월	5
	1	≥2	≥6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 또는 관련 증명자료의 제공을 요구		12개월	10
	≥2	≥2	≥12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 또는 관련 증명자료의 제공을 요구		12개월	10
기타 품질안전위험				지정된 제품의 지정항목 에 대한 검사보고서 또는 관련 증명자료의 제공을 요구		12개월	10

주 : 1. 안전위생항목에는 비식용첨가물, 금지물질, 생물독소오염, 식품첨가제 기준초과, 미생물오염, 오염물, 유전자변형성분, 농약/수의약 잔류, 방사선투사가 포함된다.

2. 비안전위생항목에는 포장불합격, 라벨불합격, 품질, 유해생물, 증서불합격, 기타불합격항목이 포함된다.

부록2

불량기록이 전체 국가/지역의 수입식품관리와 통제조치와 연관된 경우

위험예고 참고조건					참고통제조치	위험예고해제 참고조건		
불합격 항목 분류	기업 수	제품 종류수	불합격항목 종류수	불합격 차수 수		공동조건	지정시간	지정차수

안전위생 항목	≥2	1	1	≥16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 에 대해 불량기록과 연관된 불합격항목 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	1. 통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품질안전문제 미 발생 2. 통제조치를 실시하는 시간이 지정시간보다 적지 않음 3. 통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모든 식품의 수입 차수가 지정차수보다 적지 않음	6개월	100
	≥2	1	≥2	≥32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 에 대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 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		12개월	200
비(非) 안전위생항 목	≥2	1	1	≥24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 에 대해 불량기록과 연관된 불합격항목 에 대한 검사보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6개월	100
	≥2	1	≥2	≥48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불량기록과 연관된 종류제품 에 대해 식품안전국가표준 상의 항목 (표준 가운데 관계된 인용 표준)과 대응되는 검사보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12개월	200
기타 품질안전위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지정제품 에 대해 지정항목 의 검사보고서나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12개월	200